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절 일반 규정

제1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말한다.

나. **적용대상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제10.1조(정의)가호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

2) 제10.1조(정의)마호에 정의된 “당사자의 투자자”.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 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투자자¹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3) 제8.1조(정의)에 정의된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

다만,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 제1조(정의)에 정의된 “금융기관”, “공공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 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전자인증**이란 전자적 내역 또는 청구의 신뢰도에서 신뢰 수준을 확보하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 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투자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 밖의 투자와 관련하여 여전히 “적용대상인” 일 수 있다.

기 위하여 그 내역 또는 청구를 검증하거나 시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라.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전자적 주소로 송부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²

제12.2조 원칙 및 목적

1.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는 체제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사용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당사자들 간 전자상거래 및 세계적으로 보다 폭넓은 전자상거래 사용 증진

나. 전자상거래 사용에서의 신용 및 신뢰의 환경 조성에 기여, 그리고

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한 당사자들 간 협력 증진

제12.3조 적용범위³

² 당사자는 이 정의를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전달 형태를 통하여 전달되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각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그 밖의 전달 형태를 통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적용되도록 제 12.9 조(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장에 따른 의무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어떠한 당사자의 지위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1. 이 장은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정부조달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장은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제12.14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및 제12.15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는 당사자의 조치가 다음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제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10장(투자)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그러한 조치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 또는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

나.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만들어진 당사자의 약속에 명시되거나 당사자의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에 관한 모든 조건, 제한, 자격 및 요건, 또는

다. 제8장(서비스 무역) 또는 제10장(투자)의 의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예외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다음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 제8장(서비스 무역), 그리고

나. 제10장(투자)

이는 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예외뿐만 아니라,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

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Ⅲ(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을 포함한다.

제12.4조 협력

1. 각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다음을 위하여 협력한다.
 - 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사용에서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 나. 연구 및 훈련 활동, 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 지원의 제공과 같이 당사자들이 그들의 전자상거래 법적 틀을 이행하거나 증진하도록 지원할 당사자들 간 목표 협력 분야의 확인
 - 다.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사용에 관련된 도전을 다루는 것에 관한 정보,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공유
 - 라.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책임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이나 관행을 개발하는 사업 부문의 장려, 그리고
 - 마.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및 다자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
2. 당사자들은 국제 포럼에서 추구되는 기존의 협력 이니셔티브에 기초하고 이와 중복되지 않는 형태의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절 무역원활화

제12.5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자는

가. 세계관세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에 의하여 합의된 방법을 고려하여 종이 없는 무역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⁴

나.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태의 그러한 무역행정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다.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자들은 전자적 형태로 된 무역행정문서의 수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제12.6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그 당사자는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⁵

2. 전자인증에 관한 국제규범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는

가. 전자거래의 참여자가 그 전자거래를 위한 적절한 전자인증 기술 및 실행

⁴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 년의 기간 동안 이 호를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⁵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 년의 기간 동안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모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인증 기술 및 실행 모델의 인정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전자거래의 참여자가 그 전자거래가 전자인증에 관한 자신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갖도록 허용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특정한 범주의 전자거래에 대하여 전자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사용을 장려한다.

제3절

전자상거래에 기여하는 환경 조성

제12.7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당사자들은 소비자 신뢰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 밖의 조치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나 잠재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적이고 오도적인 관행으로부터 그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⁶

⁶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의 기간 동안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당사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그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4.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자신이 전자상거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소비자가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제12.8조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1.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적 틀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7, 8}

2.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각 당사자의 법적 틀의 발전에서, 그 당사자는 관련 국제기구나 국제기관의 국제 표준, 원칙, 지침 그리고 기준을 고려한다.

3.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자신이 전자상거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⁷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 년의 기간 동안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과 규정, 개인정보의 보호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과 규정, 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의 집행을 규정하는 법과 규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법인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그들의 정책 및 절차를 인터넷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5. 당사자들은 당사자로부터 이전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협력한다.

제12.9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자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수신을 중지할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2. 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이행되는 자신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⁹

3. 당사자들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10조

⁹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 년의 기간 동안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 년의 기간 동안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내 규제의 틀

1. 각 당사자는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 또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국제 협약 및 모델법을 고려하여,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적 틀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¹⁰
2. 각 당사자는 전자거래에 대한 모든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2.11조

관세

1.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자신의 현재 관행을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은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에 관한 「2017년 12월 13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WT/MIN(17)/65)」에 따른다.
3.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의 틀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에서의 모든 추가적인 결과와 관련하여 제1항에 언급된 자신의 관행을 조정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추가적인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에 비추어 이 조를 검토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조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자가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그러한 조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¹⁰ 캄보디아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의 기간 동안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2.12조

투명성

1. 각 당사자는 이 장의 운영에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실행 가능한 경우 인터넷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그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자는 이 장의 운영에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신의 모든 조치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관련 요청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응답한다.

제12.13조

사이버 보안

당사자들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가.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그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역량 구축, 그리고
- 나.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안에서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사용

제4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증진

제12.1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관한 자신만의 조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¹¹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2항과 불합치하는 모든 조치.¹²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나.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2.15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신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¹¹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3년의 추가 기간 동안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베트남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의 기간 동안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¹² 이 호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이행의 필요성은 이행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2.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적용대상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¹³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2항과 불합치하는 모든 조치.¹⁴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나.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5절

그 밖의 규정

제12.16조

전자상거래에 관한 대화

1.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사용 증진에서 대화의 가치를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대화를 수행할 때 다음의 사안을 고려한다.

가. 제12.4조(협력)에 따른 협력

¹³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3년의 추가 기간 동안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베트남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의 기간 동안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¹⁴ 이 호의 목적상, 당사자들은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이행의 필요성은 이행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나. 디지털제품의 취급, 소스코드, 그리고 금융 서비스에서 국경 간 데이터의 흐름 및 컴퓨터 설비의 위치와 같은 현재 및 새로운 사안, 그리고

다. 반경쟁 관행, 온라인 분쟁해결, 그리고 전문가의 국경 간 일시적 이동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술 촉진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사용에 관련된 그 밖의 사안

2. 그 대화는 제18.3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기능) 제1항차호에 따라 수행된다.

3. 당사자들은 제1항에 열거된 사안 및 이 조에 따라 수행된 모든 대화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고를 제20.8조(일반 검토)에 따라 수행되는 이 협정의 일반 검토의 맥락에서 고려한다.

제12.17조

분쟁해결

1.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먼저 성실하게 협의에 참여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협의에서 이견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제18.3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자도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20.8조(일반 검토)에 따라 수행되는 이 협정의 모든 일반 검토의 일부로 당사자들은 이 장에 대한 제19장(분쟁해결)의 적용을 검토한다. 그 검토의 완료 후, 제19장(분쟁해결)은 그 적용에 합의한 당사자들 간 이 장에 적용된다.